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) 소독제 효력시험지침



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수산방역과), 051-720-304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약사법」 제31조, 제42조 및 제85조제1항, 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7조제1항·제 2항, 「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·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효력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소독제"란 수산동물질병 방역의 목적으로 양식장, 수산동물 사체(이하 "사체"라 한다) 등 소독대상에 적용하여 병원미생물을 사멸 또는 증식억제토록 작용하는 제제를 말한다.
- 2. "소독대상"이란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체, 사육수조, 양식장 바닥 및 배관, 차량 및 운반용구, 유입수, 배출수, 오물, 기구 등을 말하며, "소독대상의 분류"는 소독 대상의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분류하되, 일반적으로 사체, 사육수조, 차량 및 운반용구, 배출수, 오물 등은 유기물이 많이 함유된 대상으로, 양식장 바닥 및 배관, 유입수, 기구, 일반차량 등은 유기물이 적게 함유된 대상으로 분류한다.
- 3. "유기물"이란 소독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탄수화물, 지방 또는 단백질 등이 들어 있는 수산동물(이하 "동물"이라 한다)의 분비물, 배설물, 장내용물, 혈액, 동물의 조직, 사료찌꺼기 등을 말한다.
- 4. "소독대상 병원체"란 동물의 건강한 사육을 위하여 사멸 또는 증식억제의 대상이 되는 병원성을 갖고 있는 병원체들을 의미하며,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"특정 병원체"란 허가항목의 소독대상 병원체에 특정 병원체명 (또는 특정 질병명)을 기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.
 - 나. "일반 병원체"란 허가항목의 소독대상 병원체에 대표균주에 대한 시험의 결과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 병원체명이 아닌 '세균, 아포 또는 곰팡이'등의 용어로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5. "경수"란 증류수 1 리터(liter)에 CaCl2 0.305g과 MgCl2. · 6H2O 0.139g(w/v)을 함유한 것을 의미한다.
- 6. "유기물희석액"이란 소독제의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유기물을 함유한 경수를 의미하며, 세균용 및 곰팡이의 유기물희석액은 5%(w/v) 효모추출물(yeast extract)을, 바이러스용의 유기물희석액은 5% 소태아혈청(fetal bovine serum)을 함유한 액체를 의미한다. 이 중 세균용 및 곰팡이의 유기물희석액의 조제방법은 효모추출물 20%(w/v)가 함유되도록 경수에 용해한 다음 고압멸균(121℃ 15분)하여 4℃에 보관하면서, 사용 시에는 경수로 4배 희석하여 5% 함량의 유기물희석액으로 만들되, 1N 수산화나트륨액으로 pH7.0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. 이때 소독제의 성분이 요오드포류(iodophors)인 경우는 6주 이상 보관 후 사용한다.
- 제3조(표준시험법) 표준시험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1의 "세균 등의 소독제 효력시험", 별지 2의 "바이러 스의 소독제 효력시험", 별지 3의 "곰팡이의 소독제 효력시험"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아포세균, 결핵균, 곰팡이 및 특정 병원체에 관한 세부시험과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① "표준시험조건"이란 소독대상 병원체를 함유한 증류수희석액, 경수희석액 또는 유기물희석액을 각각 소독제를 함유한 증류수, 경수 및 유기물 희석액과 동량 혼합 후 4℃에서 30분간(결핵균 또는 아포는 60분) 처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.
 - ② "선택시험조건"이란 표준시험조건 외에 제제 특성과 소독대상 등에 따라 반응시간(1분, 5분, 15분 등)과 반응 온도(-10℃, -5℃, 4℃, 10℃ 등)를 추가로 선택하여 처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.
 - ③ "소독제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 설계 시 처리구"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. 이때 표시 +와 -는 각 처리구의 성분구성 여부를 의미하며, 유기물의 무·저·고는 결과활용 시 소독대상의 유기물 함유 정도를 의미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

	처리구	증류수	경수	유기물	소독제	비고
	1 (유기물 무)	+	_	-	+	증류수 조건
	2 (유기물 저)	_	+	-	+	경수 조건
	3 (유기물 고)	_	+	+	+	유기물+경수 조건
	4 (병원체대조)	_	+	-	_	처리구 2, 3의 대조
	5 (증류수대조)	+	_	_	_	처리구 1의 대조

- ④ "유효희석배수"란 시험조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최소량의 유효성분에 대한 희석액의 배수로 표기한다.
- ⑤ "유효희석배수의 판정"은 증류수희석액, 경수희석액, 유기물희석액의 3가지 조건에서 실시한 각각의 시험결 과에 대한 것이며, 제3조제2항의 시험설계에 따른 처리구 2와 3은 처리구 4를, 처리구 1은 처리구 5를 대조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.
- 1. 세균의 경우는 별지 1과 같이 시험하여, 5개의 동일 소독제 희석배수의 영양배지에서 2개 이상 증식이 인정 되지 않는 최종 소독희석 단계를 유효농도로 한다.
- 2. 바이러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준시험조건에서 병원체 대조군과 비교하여 병원체가 104 PFU(또는 TCID50, EID50, LD50 등)(대수차이로 1)의 사멸 또는 불활화가 확인된 희석배수를 유효농도로 한다.
- 3. 시험제품에 대한 최종 희석배수는 20%의 오차범위 내의 3반복 시험결과의 중위수(median)로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곰팡이용 소독제에 대한 시험조건, 처리구, 유효희석 배수의 판정 등은 별지 3 곰팡이의 소독제 효력시험 기준에 따른다.
- 제4조(효력시험결과 활용) 권장희석배수는 유효희석배수의 80%값에 해당되는 희석배수로 정하며, 제2조의 소독대 상 분류에 따라 병원체명(질병명)별로 희석배수를 구분하여 표기한다.
- 제4조의2(시험제품의 관리 등) ① 효력시험 실시 전 시험제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(이하 "검사기 관"이라 한다)에서 함량검사를 받아야 하며, 함량검사 결과는 유효성분 함량기준(95~105%)에 적합하여야 한다.
 - ② 효력시험 의뢰자(이하 "의뢰자"라 한다)는 동일한 제조단위(롯트)의 시험제품 최소 3개 이상을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제①항에 따른 합량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검사기관은 시험제품 2개 이상을 봉인하여 의뢰자에게 송부하 여야 하며, 이 경우 의뢰자는 1개 이상은 효력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, 1개는 유효기간에 1년을 더하여 보 관하여야 한다.
 - ④ 효력시험기관은 제공받은 시험제품의 봉인 상태 및 함량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.
 - ⑤ 기타 소독제 효력시험기관 및 의뢰자의 임무 등 관리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"수산용 동물용 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"의 제12조.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.
- 제5조(효력시험결과 제출) 효력시험결과 제출에 적용하는 시험방법 및 보고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세균 등의 제2조제4호나목의 일반병원체를 소독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별지 1의 대표균주에 대한 성적을 제 출하여야 한다.
 - 2. 세균,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의 특정 병원체를 소독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 제시된 해당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 성적을 제출한다. 다만, 소독제의 성분특성과 시험세균, 바이러스 및 곰팡이의 생물학 적 특성에 따라 소독제 효능을 검사하는 과학적 공인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거하여 시험방법을 적 절히 변경할 수 있다.
 - 3.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소독제의 효력시험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.
 - 가. 시험제목, 시험목적 및 시험성적요약
 - 나. 시험의뢰자 성명 및 소속기관
 - 다. 시험기관의 명칭, 소재지, 시험기관장 성명
 - 라.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, 소속 및 직책
 - 마. 시험제품의 제품명, 제조번호, 제조일자 및 원료약품분량

법제처

- 바. 시험기간, 시험방법, 시험성적 및 평가기준
- 사. 시험세균, 바이러스 및 곰팡이의 성상 및 출처
- 아. 시험제품의 동물, 취급자, 사물, 기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주의사항
- 자.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책임자의 종합의견
- **제6조(시험제한)** 해외악성전염병의 소독제 시험은 국내시험을 제한하며,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로서 전염성의 우려가 있거나 공중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**제7조(보칙)**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독제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외국의 사례 및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재검토기한)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1-2호, 2021. 2. 24.>

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/ 서식

[별지 1] 세균 등의 소독제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

[별지 2] 바이러스의 소독제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

[별지 3] 곰팡이의 소독제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